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발의 의안.....2면
-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검토보고서.....32면
-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제안설명서.....39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6. 7.(수)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의원외6인】
2.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3.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장익봉의원외6인】
5.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31.
 발의자 : 여노연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장익봉
 이화숙 의원(7인)

1. 주 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6. 7. ~ 6. 11.까지 활동할 것을 제안함.

2. 제안이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의자 : 김종식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1. 개정이유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감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1항에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
- 제15조제1항에서 기존 상위법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준 변경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자료 내 금지 부분 정정
- 별표4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하고, 관리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 1대로 변경

3. 조 례 안 : 불 임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5. 30. ~ 6. 5.
-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모든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 급지별 주차기본요금						
급 지	시 간	1회 주차요금(구획당)		회수권(1일)	정기주차권(월)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원	200원	4,000원	60,000원	40,000원
2 급 지		400원	100원	3,000원	50,000원	30,000원
3 급 지		300원	100원	2,500원	40,000원	20,000원
○ 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15인승 미만	15~45인승 미만	45인승 이상	2.5톤 미만	2.5~11톤 미만	11톤 이상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의 3 배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 의 3 배
<p>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p> <p>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성주읍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나. 2급지 : 가천면·초전면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다. 3급지 : 1·2급지 이외의 지역 모두</p> <p>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p> <p>4.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p> <p>5.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의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6.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은 1급지에 한한다.</p>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가. 시설면적 90㎡당 1대(시설면적/9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가. 시설면적 135㎡당 1대(시설면적/13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가.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의 경우 시설면적 100㎡ 초과 150㎡이하 : 1대) 나.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가.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할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호)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85㎡이하 : 주차장설치기준 1대/95㎡ ○전용면적 85㎡초과 : 주차장설치기준 1대/75㎡ 나.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원룸형 주택은 세대당주차대수가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0.75대)이상인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가.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나.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다.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라.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가. 시설면적 315㎡당 1대(시설면적/315㎡)
8. 창고시설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9. 학생용 기숙사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10 그 밖의 건축물	가. 시설면적 270㎡당 1대(시설면적/270㎡)

※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다.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 급지별 주차기본요금						
급 지	1회 주차요금(구획당)			정기주차권(월)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회수권(1일)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원	200원	4,000원	60,000원	40,000원	
2 급 지	400원	100원	3,000원	50,000원	30,000원	
3 급 지	300원	100원	2,500원	40,000원	20,000원	

○ 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15인승 미만	15~45인승 미만	45인승 이상	2.5톤 미만	2.5~11톤 미만	11톤 이상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의 3 배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의 3 배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성주읍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나. 2급지 : 가천면·초전면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다. 3급지 : 1·2급지 이외의 지역 모두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
4.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5.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6.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은 1급지에 한한다.

【별표 4】 <신설 2018.11.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가. 시설면적 90㎡당 1대(시설면적/9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가. 시설면적 135㎡당 1대(시설면적/13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가.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나.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가.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값은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호)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용면적 85㎡이하 : 주차장설치기준 1대/95㎡ ○ 전용면적 85㎡초과 : 주차장설치기준 1대/75㎡ 나.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원룸형 주택은 세대당주차대수가0.9대(세대당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0.75대)이상인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가.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나.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다. 육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라.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가. 시설면적 315㎡당 1대(시설면적/315㎡)
8. 창고시설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9. 학생용 기숙사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10. 그 밖의 건축물	가. 시설면적 270㎡당 1대(시설면적/270㎡)

※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 급지별 주차기본요금						
급 지	1회 주차요금(구획당)			정기주차권(월)		
	최초 30분	30분 초과시 10분마다	회수권(1일)	주 간	야 간	
1 급 지	500원	200원	4,000원	60,000원	40,000원	
2 급 지	400원	100원	3,000원	50,000원	30,000원	
3 급 지	300원	100원	2,500원	40,000원	20,000원	

○ 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15인승 미만	15~45인승 미만	45인승 이상	2.5톤 미만	2.5~11톤 미만	11톤 이상
기본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의 3 배	기본요금	기본요금의 2 배	기본요금의 3 배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성주읍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나. 2급지 : 가천면·초전면 도시계획구역내 지역
다. 3급지 : 1·2급지 이외의 지역 모두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
4. 주차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5.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6.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기준은 1급지에 한한다.

【별표 4】 <신설 2018.11.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탁시설	가. 시설면적 90㎡당 1대(시설면적/9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육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애인식당	가. 시설면적 135㎡당 1대(시설면적/135㎡)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가. 시설면적 180㎡당 1대(시설면적/180㎡)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나.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가.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값은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호)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용면적 85㎡이하 : 주차장설치기준 1대/95㎡ ○ 전용면적 85㎡초과 : 주차장설치기준 1대/75㎡ 나.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따른원룸형 주택은 세대당주차대수가0.9대(세대당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0.75대)이상인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육외수영장, 관람장	가.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나.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다. 육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라.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가. 시설면적 315㎡당 1대(시설면적/315㎡)
8. 창고시설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9. 학생용 기숙사	가. 시설면적 360㎡당 1대(시설면적/360㎡)
10. 그 밖의 건축물	가. 시설면적 270㎡당 1대(시설면적/270㎡)

※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다.

참 고**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여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의자 : 여노연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장익봉 이화숙 의원

1. 제정이유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기본정책,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 군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3. 조 례 안 : 불 임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2023. 5. 30. ~ 6. 5.
-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 예방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을 비롯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8.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성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별이 전체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성주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3.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⑨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간 자살예방주간으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산하기관 및 단체·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1조(자살예방사업 단체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6. 10.>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

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8. 12. 11., 2019. 1. 1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 15.>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2. 2.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장익봉 · 김성우 · 도희재 구교강 · 김종식 · 여노연 이화숙 의원

1. 제안이유

유럽의 우수 문화유산 및 관광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관광 도시 성주로 성장하기 위한 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 상품 연구와 도시재생 성공사례 시찰을 통해 성주의 유희공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장 지 : 동유럽(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 출장목적 : 문화·관광·도시재생 정책 개발 및 활용 방안 검토
- 출장기간 : 2023. 4. 26. ~ 5. 2.(5박 7일)
- 출 장 자 : 김성우·도희재·구교강·김종식·여노연·장익봉·이화숙 의원
- 출장성과
 - 문화 및 관광정책 개발 검토
 - 유희공간 활용 방안 모색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
-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첨)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5월 26일
제출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22년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23년도 배정된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97명 → 699명(증2)(안 제2조)

1) 의회사무기구 : 15명(증2)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1) 기관별

- 의회 : 13명 → 15명(+2)

2) 직급별

- 일반직 : 660명 → 662명(+2)

· 6급이하 : 618명 → 620명(+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반영

다. 입법예고 : 2023. 4. 25. ~ 2023. 5. 5.(10일간)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4905(2023. 4. 24.)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바. 비용추계서 : 첨부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7명이며”를 “69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명”을 “15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6	15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2	358	15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 이하 소계	620	339	12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이하 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697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3명</u></p>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97</td> <td>366</td> <td>13</td> <td>101</td> <td>43</td> <td>17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60</td> <td>358</td> <td>13</td> <td>72</td> <td>43</td> <td>174</td> </tr> <tr> <td> 4급</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 5급</td> <td>33</td> <td>16</td> <td>3</td> <td>2</td> <td>3</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소계</td> <td>618</td> <td>339</td> <td>10</td> <td>68</td> <td>37</td> <td>16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td> <td></td> <td>1</td> <td>3</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급상당이하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7</td> <td></td> <td></td> <td>27</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7	366	13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0	358	13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18	339	10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p>제2조 (정원의 총수) ----- ----- <u>699명</u>이며----- -----.</p> <p>2. ----- <u>15명</u></p> <p>[별표3]</p> <p style="text-align: center;">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th> <th>직 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699</td> <td>366</td> <td>15</td> <td>101</td> <td>43</td> <td>17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662</td> <td>358</td> <td>15</td> <td>72</td> <td>43</td> <td>174</td> </tr> <tr> <td> 4급</td> <td>2</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3</td> <td>2</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 5급</td> <td>33</td> <td>16</td> <td>3</td> <td>2</td> <td>3</td> <td>9</td> </tr> <tr> <td>6급상당이하소계</td> <td>620</td> <td>339</td> <td>12</td> <td>68</td> <td>37</td> <td>16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4</td> <td></td> <td></td> <td>1</td> <td>3</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급상당이하소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8</td> <td>6</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7</td> <td></td> <td></td> <td>27</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3</td> <td></td> <td></td> <td>3</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24</td> <td></td> <td></td> <td>24</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6	15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2	358	15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0	339	12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7	366	13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0	358	13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18	339	10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99	366	15	101	43	17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62	358	15	72	43	174																																																																																																																																																																																																																																																							
4급	2	1		1																																																																																																																																																																																																																																																									
4-5급	3	2				1																																																																																																																																																																																																																																																							
5급	33	16	3	2	3	9																																																																																																																																																																																																																																																							
6급상당이하소계	620	339	12	68	37	164																																																																																																																																																																																																																																																							
전문경력관 소계	4			1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이하소계	1	1																																																																																																																																																																																																																																																											
연구직 계	8	6		2																																																																																																																																																																																																																																																									
연구관																																																																																																																																																																																																																																																													
연구사	8	6		2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정원 증원(2명)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2. 비용 추계의 전제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에 의함.

3. 비용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인건비	71,426	75,494	79,996	84,964	90,457	402,336
	소계(a)	71,426	75,494	79,996	84,964	90,457	402,336
세입	지방세						
	교부세						
	소계(b)						
총 비용(a-b)		71,426	75,494	79,996	84,964	90,457	402,33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71,426	75,494	79,996	84,964	90,457	402,336
기 타						

5. 비용추계 상세내역

(1) 기준금액

※ 2023년 보수표 기준

(단위: 원)

직급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7급	호봉	3	4	5	6	7
	본봉	2,146,600	2,291,100	2,444,300	2,605,300	2,772,500
9급	호봉	3	4	5	6	7
	본봉	1,821,500	1,903,000	1,999,900	2,114,900	2,252,900

(2) 수당 등 포함 금액 : 본봉의 150%

(3) 급수별 인원 : 7급 1명, 9급 1명

6.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6. 7.(수)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여노연의원외6인】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김종식 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감을 낮추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1항에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
- 제15조제1항에서 기존 상위법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을 기준 변경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자료 내 금지 부분 정정
- 별표4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하고 관리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00m²초과 150m²이하 1대로 단서조항 추가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3. 5. 30. ~ 6. 5.)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감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계별 유료화가 필요하고,
-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관리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건립 시 건폐율 20% 또는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단독주택 내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며, 단독주택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안

1. 제 안 자 : 여노연 의원 외 6인

2. 제정이유

-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기본정책,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3조)
- 군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4. 참고사항

-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3. 5. 30. ~ 6. 5.)
-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생명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자살예방 사업계획의 수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의 자살예방 정책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자살률 감소에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22년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23년도 배정된 의회 정책지원관 기준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697명 → 699명(+2)(안 제2조)
 - 의회사무기구 : 15명(+2)
-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기관별(의회: 13명 → 15명(+2))
 - 직급별(일반직: 660명 → 662명(+2명) / 6급이하: 618명 → 620명(+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9조, 제30조
- 예산조치 : 기준인건비 반영
- 입법예고 : 2023. 4. 25. ~ 2023. 5. 5.(10일간)
-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4905(2023. 4. 2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비용추계서 : 첨부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6. 7.(수)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제안설명서

〈 의 안 목 록 〉	〈 제 안 설 명 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여 노 연 의 원】
○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종 식 의 원】
○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여 노 연 의 원】
○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장 익 봉 의 원】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 치 행 정 과 장】



성 주 군 의 회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2023. 6. 7.(수) 본회의장

제안설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주군의회

여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2023. 6. 7.(수) 본회의장

제안설명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의 회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감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 기존 상위법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자료 내 급지 부분을
정정하였으며,

별표4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 관리지역의 경우, 시설면적 100m² 초과
150m² 이하 1대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
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2023. 6. 7.(수) 본회의장

제안설명서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성 주 군 의 회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성주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책·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2023. 6. 7.(수) 본회의장

제안설명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성 주 군 의 회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럽의 선진화된 문화·관광 정책과 도시개발 사례를 시찰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주군에 접목할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외 6인이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5박 7일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중심 행복성주

2023.6.7.(수) 11:00
의회 본회의장(5층)

제안설명서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백대흠

존경하는 김 성 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2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2023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
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공무원 정원 총수를 699명으로 2명 증원하

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2명 증원하여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 성 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